

공공장소에서의 승강기 안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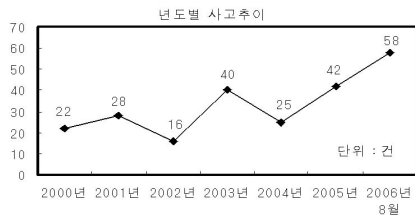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공간의 아파트화, 고층화에 따라 건물 내의 수직교통수단으로서의 승강기는 사회의 대동맥으로서 우리생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승강기 이용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용자들은 승강기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 승강기 사고 통계

가. 연도별 사고현황

년 도	승강기 설치대수(대)	사고건수 (건)	사고 발생율(%)
2000년	190,187	22	0.0116
2001년	208,497	28	0.0134
2002년	231,562	16	0.0069
2003년	259,850	40	0.0154
2004년	289,808	25	0.0086
2005년	314,495	42	0.0134
2006년 8월	328,107	58	0.0177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나. 사고원인별 현황(2006년 8월)

계	이용자 과실	작업자 과실	유지관리부실		제조 불량	개문 출발	기타
			관리 부실	보수 부실			
58	35	1	12	6	0	0	4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다. 피해정도별 현황

계	사망	중상	경상
78	9	39	30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라. 피해자 구분별 현황

계	일반이용자	건물관리직원	승강기업체직원
78	75	2	1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 사고 형태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시 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탑승하다가 추락

(2)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관리자가 카의 정지 층을 확인하지 않거나 승강장 위치표시기의 표시가 잘못되어 관리자가 카의 정지 층을 오인하여 사고 발생

(3)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 등이 직접 고장수리를 하다가 사고 발생

- (4) 엘리베이터의 보수점검시 자동·수동 전환 스위치 오조작으로 사고 발생
- (5) 카 위에서 자동운전상태에서 보수점검을 하다가 사고 발생
- (6) 엘리베이터의 보수점검을 위한 안전회로의 단락을 보수점검 후 제거하지 않아 사고 발생
- (7) 카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지거나 실족
- (8) 작업자간의 행동 불일치에 의한 사고 발생
- (9) 엘리베이터 공사작업 도중 카의 지지상태 미확인인에 의한 사고 발생
- (10) 승강기검사중 주위의 구조물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사고 발생
- (11) 엘리베이터의 보수작업 도중 일반인의 접근 제지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
- (12) 엘리베이터의 보수작업 도중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을 탑승시켜 사고 발생
- (13)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 발생
- (14)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구출자가 승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1)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자동차 운전자가 카 내로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승강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승강장 문과 충돌하거나 충돌 후 추락
- (2)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화물운반 등의 타용도로 이용하다가 추락
- (3) 일반인의 탑승이 금지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하다 사고 발생
- (4) 어린이들이 카 내로 진입하여 엘리베이터 구조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추락, 협착 위험

4. 승강기 사고 사례

가. 엘리베이터

- (1) 전도
 -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여 6층으로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6층에서 정지하지 않고 15층에 승강장 바닥보다 높게 정지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리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짐
- (2) 끼임
 - 어린이 왼손이 카 문틀과 카 도어 틈새로 말려들어난 후 문이 다시 닫히는 과정에서 손등이 문틀 끝단에 끼임
 - 9층에서 1층으로 내려 가기 위해 사고승강기를 탑승하던 중 일행 중 한명이 먼저 탑승하고 두 번째로 탑승하던 피해자가 승강장 문 사이에 끼인 상태로 승강기가 하강하여 발생함
 - 피해자가 왼손에 가방끈을 잡고 가방을 끌며 1층에서 카에 탑승하였으나 가방 본체가 카 밖에 있는 상태로 도어가 닫히며 카가 출발하여 1층 승강장문을 상부에 가방본체가 끼이고 가방끈이 당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한마디가 절단됨
- (3) 추락
 -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1층 승강장 도어를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승강로로 진입하여 피트로 추락함
 - 피해자가 덤웨이터에 급식용 대차를 싣기 위해 1층 승강장 도어를 연 후 카 도어를 개방하던 중 1층 승강장 도어의 연동로프가 끊어지며 도어가 추락하면서 오른쪽 팔에 부상을 당함
 - 피해자가 승용차를 몰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도어 쪽으로 전진하며 지하 1층 도어를 밀치고 지하 2층 피트로 추락함
 - 피해자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화물을 싣고 올라가 1층에서 내리던 중 부주의로 1층

출입문 반대편의 카와 승강로 벽사이로 추락함

나. 에스컬레이터

(1) 전도

- 피해자가 부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중 왼쪽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짐
-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핸드레일 바깥 쪽으로 몸을 내밀어 앞을 보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짐
-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에 서 있다가 천이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 후 이동하는 디딤판 위에서 몇 걸음 걸어 오르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뒤로 넘어짐

(2) 협착 및 끼임

-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핸드레일 밖으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머리를 내밀다 핸드레일 끝단과 측면 벽 사이에 머리가 끼임
- 피해자가 어머니와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내려 오던 중 스커드가드 판넬과 디딤판 사이에 왼발이 끼임
- 피해자가 디딤판을 고정하는 부위가 깨져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1층 승강장 부근 콤비 밀으로 발이 끼어들어가면서 엄지발가락이 절단됨

5. 승강기 일상점검

가. 일상점검의 중요성

(1)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한다.

(2) 승강기의 품질유지

승강기가 가지는 품질을 제대로 유지·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가능하다.

(3) 승강기의 수명을 연장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적절한 품질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편리 도모

일상점검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조치함으로써 승강기를 항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 일상점검 항목

(1) 운전상태의 확인

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데에 사용되는 버튼을 호출버튼이라 한다.

- 호출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점등되는가?
-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호출버튼이 소등되는가?
- 이 호출버튼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호출버튼만이 꺼지게 되고 반대방향의 호출버튼은 점등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표시장치의 상태

- 층표시
- 운전방향표시
- 홀랜턴의 점등 확인
- 기타 운행에 필요한 표시장치의 동작확인

③ 카내 버튼의 동작

- 카의 행선버튼동작
- 카의 도어열림버튼 확인
- 카의 인터폰버튼 확인
- ④ 도어장치
 - 도어의 열림동작 확인
 - 도어의 닫힘동작 확인
- (2) 안전장치의 확인
 - ① 도어끼임방지장치(문닫힘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 ② 도어오픈버튼(열린버튼)의 작동상태 확인
 - ③ 승강장호출버튼 리오픈의 작동상태 확인
 - ④ 수동조작반 잠금장치 확인 및 사용 후 수동 조작반 잠금장치 확인
 - ⑤ 인터폰의 동작 상태 확인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부저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 ⑥ 엘리베이터의 중앙처리 장치인 기계실 출입 통제 및 잠금장치 확인
- (3) 성능의 확인
 - ① 도어장치
 - 움직임에 걸림이 없는가?
 - 속도는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 동작 중 소음은 없는가를 확인한다.
 - ② 착상 정밀도를 확인한다.

착상정밀도란,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였을 때 승강장의 바닥면과 카의 바닥면의 수준의 차이를 말하며, 아파트 등의 보급형 엘리베이터는 ±15mm정도이고, 오피스빌딩의 고급형 엘리베이터는 ±10mm정도이다.

- ③ 기동, 감속, 정지시 쇼크 및 주행진동을 확인한다.
 - 쇼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보급형 엘리베이터의 기동, 감속, 정지시 50gal 이하이고, 오피스 빌딩 등의 고급형 엘리베이터는 30gal 이하 이어야 한다.
 - 주행중 진동은 아파트 등 보급형 엘리베이터는 40gal 이하로 하고, 오피스 빌딩 등의

고급형 엘리베이터는 20gal 이하 이어야 한다.

- ④ 만원검지장치의 잠금장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⑤ 승강장도어 인터록장치 기능을 확인 한다.

다. 이용자를 통한 일상점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보통의 경우에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상 또는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

따라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조치하는 창고로 엘리베이터내 또는 1층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불편신고 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에스컬레이터 일상점검

(1) 운전전 점검

- ① 스텝 및 콤브가 깨지거나 금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② 스텝 및 콤브에 이물질이 끼어있는지 확인한다.
- ③ 스텝 및 콤브의 빗살이 빠져있는지 확인한다.
- ④ 스커트가드의 연결부위가 어긋나 있는지 확인한다.
- ⑤ 스텝과 스커트가드의 틈새가 정상인지를 확인한다.
- ⑥ 핸드레일이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⑦ 삼각보호판이 견고히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 ⑧ 추락보호용 난간이 견고한지 확인한다.

(2) 운전중 점검

- ① 운전중에 평소와는 다른 소음 및 진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② 핸드레일의 속도가 스텝의 속도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③ 스텝의 홈과 콤프의 빗살이 정확히 맞추어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6. 승강기 일상 관리

가. 비상열쇠 관리

(1) 엘리베이터 비상열쇠의 종류

- ① 수동조작반 열쇠
- ② 승강장도어 열쇠
- ③ 기계실 열쇠
- ④ 비상용 승강기의 소방안전 열쇠(1차, 2차)
- (2) 비상열쇠는 보관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 (3)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사유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4) 비상열쇠의 분실 또는 파손시 즉시 보수업체 등에 연락하여 지체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

(5) 비상열쇠는 운행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의 보수자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승강기 기록유지관리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승강기 고장시 연락시간, 보수자 도착시간, 수리완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장원인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비상연락망

(1) 승강기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관리규정과 동일 장소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2) 관리책임자, 관리주체, 보수업체 등의 비상연락방법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라.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인근의 병원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에 명기한다.

마. 승강기 사고보고

(1) 승강기 사고시 사고에 대한 경과를 작성하여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2) 승강기 사고통보서(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172호, 2001.3.21)를 제출한다.

바. 수리·점검시 운행정지의 안내 및 방호조치

엘리베이터의 정기점검, 수리, 정기검사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내 및 방호장치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점검 등 예고된 운행중지는 반드시 사전에 안내문을 게시해 이용자의 협조를 구하고, 점검, 검사, 수리를 실시 중에 안내를 받지 못한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 및 탑승을 금지하는 방호장치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 기타 관리사항

(1) 엘리베이터 도어 홈 이물질에 의해 작동을 안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의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엘리베이터 내의 조명 상태를 유지시킨다.

(3) 카벨, 조작반, 승강장버튼 등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는 않아야 한다.

(4) 승강기 검사확인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5) 승강기 안전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도어문턱부근에서는 각종 안전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7) 기계실이 침수 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비상 구출요령

가. 승강기 사고시 조치요령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1)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
- (2) 119구조대(소방서), 보수업체 등에 연락
- (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 (4) 승강기 사고현황을 승강기 검사기관에 보고
- (5) 카내 승객의 비상구출

나.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힌 경우

(1) 엘리베이터내와 인터폰을 통하여 갇힌 승객에게 엘리베이터 내에는 외부와 공기가 통하고 있으므로 질식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염려가 없음을 알려 승객을 안심시킨다.

(2) 구출할 때까지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3)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확인한다.

① 감시반과 승강장의 위치표시기에 의해 위치를 확인한다.

② 위치표시기에 나타난 층으로 가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있는지 확인한다.

④ 정전 시에는 위치표시기가 꺼져 있으므로 실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치표시기에 나타난 층과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층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컴퓨터제어방식인 경우 엘리베이터 주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CPU를 Reset 시킨다.

※ 경미한 고장인 경우에는 CPU의 Reset으로 정상 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본 작업은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설치업체직원 등) 외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 구출작업시 시스템의 불안전상태의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려 있어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6) 엘리베이터를 확인할 때 카 도어가 열려있지 않으면 카도어를 손으로 연다.

(7) 카의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출시 승객이 승강로로 추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반

드시 승객의 손을 잡고 구출하여야 한다.

(8) 층간에 걸려서 구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설치업체직원 등) 외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 권상기의 수동조작요령

이 작업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기술훈련으로 경험을 쌓은 자가 2인 이상이 실시하여야 하고, 원기어인 권상기에서만 수행한다. 그러나 무기어방식 또는 헬리컬기어방식의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행하지 않는다.

① 반드시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인터폰으로 갇힌 승객에게 카도어가 닫혀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문이 열려있으면 단도록 요구한다.

③ ‘갑’은 전동기 축에 수동핸들을 끼워서 양손으로 단단히 잡는다.

④ 전동기의 축에 플라이휠이 달려있으면 플라이휠을 잡아도 좋으나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잡아야 한다.

⑤ ‘을’은 전자브레이크의 개방레버를 개방위치에 걸고 대기한다.

⑥ ‘갑’은 회전방향을 결정하고 ‘을’에게 “개방”이라고 신호하고 ‘을’은 “개방”이라고 복창하고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한다.

⑦ ‘갑’은 결정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전동기를 회전시킨다. 이때 카 또는 균형추의 무게에 의하여 저절로 회전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⑧ 결정된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으면 회전방향을 반대로 수정한다.

⑨ 조금 움직이면 ‘갑’은 “정지”라고 신호하고 ‘을’은 “정지”라고 복창하면서 손에 힘을 빼 브레이크를 동작시킨다.

⑩ ‘갑’은 주로프 또는 조속기 로프 등의 정지위치표시를 확인한다.

⑪ 정지위치표시에 카가 올 때까지 ⑥ ~ ⑩을

반복한다.

⑪ 승강장의 착상위치에 도착하면 수동핸들, 개방레버를 벗긴다.

8. 승강기 이용안전

가.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1) 정원 및 적재하중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으로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3)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문턱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에 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도어개폐기 출입문에 기대면 손이나 옷자락이 팔려 들어가므로 조심해야 한다.

(6)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관리자의 입회·허락 없이 크거나 무거운 화물을 무단으로 싣지 않는다.

나. 엘리베이터 이용 에티켓

(1)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않는다.

(4)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5)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는 질서를 지킨다.

(6) 뒤에 타는 이용자를 위해 열림 버튼을 눌러 준다.

(7) 정원이 초과되면 맨 나중에 탄 승객이 내린다.



다. 승강기 고장시 행동요령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승강기가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해 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카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승강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용 중이던 승강기가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카 내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관리사무실 등에 알려 전문 가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요청하고 보수업체, 119 구조대 등의 구조를 받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다.

다음 사항은 응급상황시 대처요령이다.

(1)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2) 엘리베이터를 도중에 정지시키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3)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카 문을 임의로 강제로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5)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지 않는다.

(6)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한다.

라. 화재시 행동요령

(1) 빌딩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②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시고, 빌딩 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지상 층으로 불러 들여 문을 닫고 정지시켜야 한다.

③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화활동 등 목적에 맞게 동작시킨다.

(2) 엘리베이터 수직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 가까운 층에 내린 후, 관리실에 즉시 연락한다.

② 전선이나 레일의 윤활유가 탈 때 발생하는 매연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① 기계실에서의 화재는 전기기기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활동을 한다.

②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스 위치를 차단한다.

③ 카가 층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승객을 구출한다.

마. 지진이 발생한 경우

(1) 지진시 멈추는 경우가 생기므로 피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진도 3 정도의 지진 후에는 관리기술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문기술자의 점검과 이상유무의 확인을 한 후에 운영을 재개한다.

(3) 지진으로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구출하고 구출 완료후 상기의 점검·확인이 끝날 때까지 운전을 중지한다.

바.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

(1) 의복, 스카프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핸드레일을 꼭 잡는다.

(3) 황색 안전선 안쪽에 타야 한다.

(4) 가장자리에는 발이 닿지 않도록 한다.

(5)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타야 한다.

(6) 천천히 타도록 하고, 우측에 서서 가야 한다.(왼쪽은 보행자를 위해 비워둔다.)

(7) 주행방향을 거슬러 타거나 장난을 하지 않는다.

(8)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9) 계단에 앉거나 맨발로 타지 않는다.

(10) 동전, 열쇠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도록 한다.

(11) 유모차 등은 접어서 들고 타야 한다.(수평보행기 제외)

(12) 화물을 싣거나 계단에 놓지 않는다.(수평보행기 제외)

(13) 담배를 피우거나 껍초,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는다.

(14)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않는다.

(15) 핸드레일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